

# 책임표시의 기술방식 개선을 위한 역할어의 활용 방안 연구\*

## A Study on Using the Role Indicators to Improve the Description Methods of the Statement of Responsibility

박지영(Ziyoung Park)\*\*

### 초 록

서지레코드의 기술에 있어서 책임표시는 저작의 지적 책임 소재를 밝혀 주고 접근점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목록규칙에서는 책임표시를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나누고, 이에 따라 기술방법을 달리 하는데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역할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순서를 매기기보다는 역할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록에서 주저자를 선정한 것은 책임성에 따른 것보다는 저록의 작성이나 배열과 관련된 실무적 결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 자체를 구조화함으로써 책임표시 기술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역할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서지레코드에서 분산되거나 접근점에서 제외된 책임표시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책임표시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역할어를 검색의 패킷이나 전거레코드의 추가적인 식별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Statement of responsibility in bibliographical records plays a key role in clarifying intellectual responsibility of the work, and it also plays a role in making up access points. However, cataloging rules for the statement of responsibility mostly deal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ncipal role and minor roles. This becomes a problem because the responsibility type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the order of the types.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improvements of the description methods of statement of responsibility by organizing the role indicators. Namely, using the role indicators more effectively than the current description methods do, we can collocate the dispersed 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 The role indicators can also be used for an author facet in information retrieval and can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for authority control.

키워드: 역할어, 책임표시, 차세대 도서관 목록, 관계 표시기호, 저자 패킷, 전거제어  
role indicator, statement of responsibility,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relationship designators, author facet, authority control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전임강사(zgpark@hansung.ac.kr)

■ 논문접수일자: 2011년 8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11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28(3): 65-82, 2011. [http://dx.doi.org/10.3743/KOSIM.2011.28.3.065]

## 1. 서론

국제표준서지기술(ISBN)에서 규정한 저록의 기술요소 중에서 '책임표시' 사항은 저작의 생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에 따르면 책임표시는 '저작물의 지적·예술적 창조 또는 구현(연주 등을 포함)에 책임이 있거나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관한 표시'를 의미한다(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472). 영미목록규칙 제2판(AACR2R)의 정의는 KCR4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에 AACR2R의 개정판인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은 AACR2R의 정의에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서 제시한 제1집단 서지개체를 적용하여 책임표시를 정의하고 있다(ALA 2002). 그런데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책임표시를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구분하고, 주된 역할의 선정 방법과 부차적 역할의 취급 방법을 제시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적 책임이란 특정 저작자가 저작의 생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목록규칙에서는 주된 역할의 선정에 앞서서 저작자의 역할이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목록규칙에서 저작자의 역할을 나타내는 저작 역할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책임표시 사항에서는 저작 역할어를 제어되지 않은 형태로만 기술하게 되어 있다. 물론 기술부의 책임표시 사항을 표목부로 부출할 경우에는 구조화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서지레코드의 표목부에서 적절한 역할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녹음자료나 화상 및 영상자료, 전자자료와 같이 책임표시가 복잡한 멀티미디어 정보가 증가하여 기존 규정으로는 주된 책임표시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열람목록(OPAC) 환경에서는 서지레코드의 구조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화면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NGC)과 관련된 논의들도 서지레코드의 구조와 이용자 화면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OPAC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자의 역할에 순위를 매기는 규정의 합리성과 저작 역할어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책임표시 사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주된 저작자와 부차적 저작자의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저작자의 역할을 기재순서와 독립시키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역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지레코드에서 분산되거나 생략된 책임표시를 집중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책임표시의 구조화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표시의 역할어를 검색의 확장이나 검색 결과의 정련을 위한 패킷으로 활용하며, 전거레코드의 작성 시에 동명이인의 식별을 위한 추가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 2. 기존의 책임표시 방식

### 2.1 책임표시와 지적 책임성

전통적으로 목록에서 저자명은 가장 중요한 접근점 중 하나였으며, 심지어 일부 목록에서는 유일한 접근점이기도 했다. Cutter가 사전체 목록규칙에서 제시한 저자의 범위를 보면, 좁게는 ‘책’(book)의 개인저자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편찬자와 단체도 포함한다(1904, 14). 그런데 이 때 ‘책’이란 개별적인 서지단위가 아니라 ‘저작’을 의미한다. Cutter가 목록규칙 사상 최초로 제시한 목록의 기능에는 ‘특정 저작의 모든 판을 집중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저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책’을 사용했다. Cutter 이후에 ‘저작’의 의미는 계속 발전해 왔는데, 다만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work’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FRBR에 따르면 핵심개념인 제1집단 개체에는 저작과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체는 ‘저작’이다(IFLA Study Group on FRBR 2009, 13). 그리고 FRBR에서 저작의 정의는 ‘지적·예술적 노력의 산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적·예술적 노력’이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바로 19세기부터 존재해 온 ‘저자가 저작에 대해 가지는 지적 책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의 지적 책임성은 저록을 작성할 때 저자를 기본적인 접근점으로 간주하도록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 때 저자가 갖는 책임성과 권리가 ‘저자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저자 원칙은 한 저작의 생산에 기여한 저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주 저자를 선

정하기 위한 규정이 된다. 그리고 주저자의 선정 기준은 저작의 집중이나 검색과 같은 목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저록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둘 이상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저자가 모두 으뜸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다면, ‘첫 번째로 기재된 저자’를 주 저자로 간주한다. 또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 저자가 모두 으뜸정보원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된 역할’을 수행한 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가 갖는 지적 책임성을 부인하게 되는데, 목록규칙에서는 이를 ‘3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목록의 기술과 접근에 있어서 저자는 ‘지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저자들이 모두 동일한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Dunkin은 표목으로 선정되지 못한 여러 책임표시를 ‘거부당한 표목’(rejected entries)이라고 표현했다(1961, 180). 물론 3의 법칙은 한국목록규칙에서는 2003년에, 서구 목록규칙에서는 2008년에, 각각 폐지되었다. 서구에서는 RDA의 검토과정에서 3의 법칙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카드목록에서 부출카드의 숫자 제약으로 인한 저자의 생략이 현재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Howarth 2008, 202).

### 2.2 책임표시 방법

목록규칙을 보면 3의 법칙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주기술부에 들어갈 저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목록규칙에서 저작의 지적 책임성을 갖는 저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 2.2.1 영미계 목록규칙

현대 영미계 목록규칙의 바탕을 확립한 Panizzi의 목록규칙에서 복수저자의 역할 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British Museum 1841).

Panizzi의 법칙 중에서 '규칙3'을 보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공저자의 저작에서는 자료에 첫 번째로 기재된 저자를 배열의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규칙37'에서는 각 저자가 수행한 중요성의 비중이 다를 경우, 즉 저자의 역할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담당한 저자를 배열의 기준으로 삼는 암묵적인 규정도 있다. 그리고 '규칙7'은 하나의 저작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둘 이상의 역할이 명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논문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상이한 역할이 저작의 생산에 관여하게 되는데, Panizzi는 이 두 저자 중 하나만을 주된 역할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45'도 상이한 역할을 가진 복수 저자가 저작의 생산에 참여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는 총서나 합집의 경우로써 개별 저자가 아닌 편집

자를 배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총서나 합집의 종합표제가 없다면, 편집자가 기재되어 있어도 편집자 대신 첫 번째 저자를 표목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 종합표제의 유무에 따라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규칙50'과 '규칙51'에서는 번역서와 주석서의 생산에 기여한 지적 책임을 번역자나 주석자 보다 원저자에게 더 부여한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주석서에 원문이 함께 실리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자를 표목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항목으로 '규칙64'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저자로 선정되지 않은 저자들에 대한 참조저록 작성을 지시하고 있다. 이 때 주목할 것은 Panizzi가 부출저록도 기본저록과 '동등한 중요도'(equal claim)를 갖는다고 간주했다는 것이다. 즉, 주 저자를 선정한 것은 사실상 책임성의 경중이 아니라 저록의 배열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이었던 것이다.

Panizzi의 기술 방식은 이후 영미목록규칙에

<표 1> Panizzi의 91개 법칙 중 복수 저자 관련 조항

- 
- 공저의 경우(규칙 3, 37)
    - : 자료에 첫 번째로 기재된 개인을 표목으로 선정
  - 학위논문의 경우(규칙 7)
    - : 지도교수의 저작임이 명확하지 않는 한, 심사대상자(학생)를 저자로 간주
  - 총서 및 합집의 경우(규칙 44, 45)
    - : 편집자(editor)와 개별저자로 역할이 구분되며, 종합표제의 유무에 따라 주된 저자의 선정 기준이 결정됨
  - 번역서 및 주석서의 경우(규칙 50, 51)
    - : 원저작이 존재하는 경우 번역서나 주석서의 저자인 역자나 주석자는 대개 주된 저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 (부출저록관련)(규칙 64)
    - : 기본표목과 동일한 중요도를 가진다고 간주되는 저자명
-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Lehnus 1972). 서구의 목록규칙 중 가장 최신 규정인 RDA에서도 복수 저자의 저작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주 저자를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볼 수 있다. RDA의 규정이 이전 목록규칙과 다른 점은 FRBR 모형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식별'을 다루고 있는 2장에 속해 있다. 책임표시와 관련된 RDA의 주요 지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JSC for Development of RDA 2009).

다음의 지침을 보면 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대로 책임표시를 기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역할어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첫 번째 저자 이외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책임표시에서 제외된 저작의 기여자는 주기에 기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RDA 2.20.3.3). 역할어와 관련해서는 식별이

나 접근에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표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RDA 2.20.3.5).

이 외에 자료유형에 따른 책임표시에 관한 추가 지침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연주자와 해설자, 발표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RDA 7.23.1.3), 연주자를 기재할 경우에는 연주수단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나 녹음자료의 생산에 예술적·기술적으로 기여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원과 같이 기여도가 낮은 개인은 제외하도록 하였다(RDA 7.24.1.3). 이와 같은 RDA의 규정은 기존의 목록규칙에 비해 책임표시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연주자, 해설자' 등을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된 역할 이외에는 생략할 수 있는 여지도 허용하고 있다.

<표 2> RDA의 책임표시 관련 지침

항목	주요내용
2.4.1.4 책임표시의 기록	책임표시는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형식 그대로 기재 [선택] 책임표시를 축약할 수 있으나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생략할 수 없음
2.4.1.5 둘 이상의 개인명 등의 기록	둘 이상의 개인이나 가족, 단체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책임표시로 모두 기재 [선택] 복수의 저자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거나, 같은 정도의 책임성을 지닌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개인이나 가족, 단체를 제외하고 모두 생략하고 생략했다는 표기를 기재 [선택] 특정 그룹명과 함께 해당 그룹의 구성원 명단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책임표시에서 구성원의 표기는 생략. 구성원명이 중요하다고 간주될 때는 연주자, 해설자, 발표자 등을 기재
2.4.1.6 둘 이상의 책임표시	둘 이상의 책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원에 나타난 기재순서, 레이아웃, 활자크기 등에 따라 기재. 책임표시 순서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순서로 기재
2.4.1.7 역할어의 명시	책임표시에 기재된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나 구를 기재

### 2.2.2 한국목록규칙

현재 KCR 3판과 4판에서는 서지기술 단위 저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전통적인 목록작성 방식인 서명 기본저록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표목부와 기술부의 이중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리재철 1983, 91-93; 노지현 2005, 342). 그러나 KCR 4판에서도 책임표시와 관련된 한계점이 존재한다. KCR4에서 책임표시를 기술할 때 '해당 자료의 지적, 예술적 내용의 생성에 주된 역할을 한 책임표시'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KCR4 1.1.0). KCR4에서 규정한 책임표시 기술방식의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2003).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KCR4에서도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에 대한 구분 규정을 볼 수 있다. 부차적인 책임표시는 '책임표시에 관한 주기'(표제와 책임표시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저자나 원저자를 주기, KCR4 1.7.3.6)와 '내용주기'(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기재되지 않은 저작은 개별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를 내용주기에서 기재 가능, KCR4 1.7.3.18)와 같이 책임표시 사항이 아닌 주기사항에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규정 외에 자료유형별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녹음자료, 화상자료와 영상자료, 전자자료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단행본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칙보다 책임표시의 범위와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 2.3 관련 연구

국내에서는 서지기술에 있어서 AACR2R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의 법칙' 폐지를 제안한 연구가 있다(이명규 1999). 그리고 책임표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작역할어가 명사형으로 앞으로 오는 경우에도 이를 저자명 뒤로 옮겨 기재하도

<표 3> KCR 4판의 책임표시 관련 규정

항목	주요내용
1.1.6.1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본문의 저작자나 원작자</li> <li>•선정방법: 저작에 기재된 역할어 참고</li> <li>•역할어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자나 편(찬)자, 작곡자, 화가, 제작자, 역자, 각색자</li> </ul> </li> </ul>
1.1.6.2 (기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재순서 및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으뜸정보원의 용자와 어순대로 기술</li> <li>- 으뜸정보원에 저작의 역할을 달리하는 두 종 이상의 책임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저자를 우선 기술하고, 부차적 역할의 책임표시(감수자, 교열자, 해제자(해설자), 원문기고자 등)는 책임표시의 맨 나중이나 주기사항에 기재</li> <li>-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책임표시나 부차적 역할의 책임표시는 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서관에 따라 생략 가능</li> </ul> </li> <li>•저작역할어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형형의 저작역할어는 명사형으로 수정하여 기재</li> <li>- 저작역할이 분명한 경우에는 저작역할어 생략 가능</li> <li>- 부차적 책임표시가 있거나 저작역할어의 표시 없이는 그 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적당한 어구를 기재</li> </ul> </li> </ul>

〈표 4〉 KCR 4판의 자료유형별 책임표시 관련 규정의 유형

항목	주요내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자료(6.1.6.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록작품의 저자나 작사자, 대본작가, 작곡자 등</li> <li>2) 개작자(원작과 동일한 매체여부와 무관)</li> <li>3) 기록이나 자연의 소리 등의 채록자나 수록자</li> <li>4) 연주감독이나 지휘자</li> <li>5) 연주자나 취입자(가수)</li> <li>6) 대중음악의 제작자(프로듀서)</li> </ol> </li> <li>• 화상자료와 영상자료(7.1.6.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가, 디자이너, 작도자, 촬영자, 카피라이터, 조각가, 기획자, 주최자, 후원자, 감독, 연출자 및 원저작자 등</li> <li>2) 연기자나 배우 등은 제외</li> </ol> </li> <li>• 전자자료(8.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대상 전자자료의 제작자나 프로그램 설계자, 프로그래머, 개발자, 원안자, 원작자, 원화 작성자 등</li> </ul> </li> </ul>
기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자료(6.1.6.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전음악이나 연설녹음자료 등에서 작품의 연주자나 제작, 해설에 국한된 개인이나 단체는 주기, 연주그룹(앙상블)명과 그 단원명이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경우,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들 명칭이나 이름을 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li> <li>2) 표제와 책임표시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어구 부기 가능</li> </ol> </li> </ul>
책임표시 관련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자료(6.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책임표시를 주기에 기술. 특히 녹음자료의 경우 연주자나 연주수단의 기재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기</li> </ul> </li> <li>• 화상자료와 영상자료(7.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기획자, 촬영자, 원작자, 해설자 등을 기술. 제작에 관련된 연기자나 연주자, 출연자 등도 기재 가능. 연기자를 기술할 때 그 배역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 연기자명 다음에 배역을 나타내는 어구를 함께 기술</li> </ul> </li> <li>• 전자자료(8.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표시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공동제작자나 프로그램 설계자, 원작자, 원화 작성자, 매뉴얼 작성자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 역할어와 함께 주기</li> </ul> </li> </ul>

록 제안한 연구가 있다(이경호 2009). 또한 정옥경은 전거레코드에서 동명이인의 구별을 위한 부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2000).

역할어 측면에서 Harris 등은 이용자가 인명이나 단체명을 통해 소장자원에 접근할 때 저자나 공저자, 편집자, 편찬자, 번역자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하였다(1957, 21). 그리고 Lancaster는 검색에서 역할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역할어는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그는 Ranganathan의 상관계 표시어와 Farrandane의 관계 연산자가 우리 분

야에서 역할어의 중요성을 제시한 초기 연구라고 보았다. 또한 Lancaster는 역할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1968).

그리고 저자 원칙을 저작권의 개념과 연계해서 설명한 연구가 있다. Suljak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와 ‘저작의 보호’(protected work)를 저자 원칙과 연계했다(1971). 또한 여러 유형의 기여자들이 저작에 대한 갖는 책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주체를 저자, 발행처/데이터베이스 생산자, 배포

자, 이용자로 구분하였으며, 이차적으로 각 주체들의 책임성과 권리를 정확성, 가치, 허가, 보안과 같이 다시 유형화하였다. 예를 들면, 저자는 자신의 저작이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의 저작이 인용될 때 저자 표기로 식별될 권리를 갖는다(NFAIS 1998).

또한 저자의 기재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는 주로 공저의 비중이 높은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목록에서의 일반적인 저자의 기재순서와도 관련이 있다. Burrows와 Moore는 Garfield의 제안을 인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저자명은 1) 기여도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기재하거나, 2) 기여도가 높은 저자를 맨 앞에 두고 나머지는 알파벳순으로 기재하거나, 3) 연속해서 공저로 간행되는 경우에는 저자명을 번갈아 가며 앞부분에 기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서양에서는 관례상 공저의 경우 연구 책임자명을 맨 마지막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학 분야 DB인 PubMed에서는 2006년부터 마지막 저자만을 지정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였다(2011). 이 외에도 Costas와 Bordons에 따르면 저자명의 기재순서는 저자들 간의 상대적인 지위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011).

### 3. 책임표시 기술방식의 개선

이 장에서는 책임표시 사항을 기술할 때,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나누는 것보다 역할 자체를 구조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부에서 충실히 기재한 역할어는 목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3.1 역할 구분과 기재 순서의 분리

기존의 목록규칙에서는 복수 저자의 저작에서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저자의 지적 기여도를 판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임표시의 기재 방법이나 순서는 지적 기여도보다 기술대상 자료에 기재된 순서에 따르게 된다. 정보자료의 출판 과정에서 이미 기여도나 저자의 지위 등에 따라 기재 순서나 레이아웃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번역서와 같은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정보원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책임표시 사항을 기술할 때 원저자의 이름을 역자보다 앞에 기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경우이며, 공저자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지닌 복수 저자의 저작이나 상이한 역할을 지닌 복수 저자의 저작 모두 정보원에 기재된 순서와 역할어를 책임표시에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정보원을 바탕으로 책임표시를 기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문제는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규정에서 생긴다. 정보원에 나타난 이름과 그 역할을 충실히 표현하는데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표 5〉는 서지레코드의 책임표시에서 역할어가 저자명의 기재순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동일한 역할이 경우에 따라 주된 책임표시로 기재되기도 하고, 부차적 책임표시로 기재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책임표시를 기술할 때 글과 그림 혹은 사진을 담당할 역할을 구분하고, 어느 역할이 주된 역할인지 구분하는 것보다는, 누가

〈표 5〉 KORMARC 서지레코드에서 책임표시의 기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또는 ‘그림’을 담당한 저자가 주된 역할을 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45 00 ▼a월드 포맷: 스위스 포스터 디자인/▼d사진: <u>롤란드 지그리스트</u> : ▼e글: 롤란드 지그리스트,▼e살로메 린더크네히트 : ▼e번역: 유정숙</li> <li>2) 245 ▼a시인이 읽고 화가가 그리는 영혼의 클래식 100:▼bOde to music /▼d그림: 백순실 : ▼e글: 이인혜</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을 담당한 저자가 주된 역할을 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45 00 ▼a꽃이 있는 풍경 /▼d글: 임현경 : ▼e사진: 송기엽</li> <li>2) 245 00 ▼a박찬호의 끝나지 않은 도전 /▼d입진국 지음 : ▼e허한우 그림</li> </ol> </li> </ul>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주된 역할의 선정 기준이 마련된 시기에는 원저자와 번역자, 감수자, 해설자, 주석자 정도의 구분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최근에 등장한 멀티미디어 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책임표시를 대상으로 주된 역할을 명확히 찾기는 어렵다. AACR2R에서도 비도서자료의 경우에는 저자명 대신 표제를 주된 접근점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KCR4의 규정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KCR4에 따르면 녹음자료에서 책임표시의 범위에는 1) 수록작품의 저자나 작사자, 대본작가, 작곡

자 등, 2) 개작자(원작과 동일한 매체여부와 무관), 3) 기록이나 자연의 소리 등의 채록자나 수록자, 4) 연주감독이나 지휘자, 5) 연주자나 취입자(가수), 6) 대중음악의 제작자(프로듀서)가 포함된다(KCR4 6.1.6.1). 그러나 규칙에서 제시하는 모든 책임표시의 범위를 245의 \$d에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녹음자료에서 주로 책임표시에 기재되는 역할을 검토해 보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레코드 중 2011년에 발행된 예술분야의 레코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245 필드만 발췌하여 일부는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TAC -	IND -	CONT
245	00	▼aTheir rooms▼h[녹음자료] : ▼b우리 이야기 : ▼bYJ music essay /▼dYJ
245	01	▼a(The) Modern Jazz Quartet▼h[녹음자료] /▼dThe Modern Jazz Quartet
245	00	▼aVvip▼h[녹음자료] : ▼b1st mini album /▼dSeungri
245	00	▼aI am... working out▼h[녹음자료] /▼d유니버설 뮤직 [편]
245	00	▼a해바라기▼h[녹음자료] /▼d해바라기
245	00	▼a이광조▼h[녹음자료] = ▼xLee Kwan Cho /▼d이광조
245	00	▼aArt Blakey▼h[녹음자료] /▼dArt Blakey
245	20	▼a(축복의 선물) 하루▼h[녹음자료] : ▼b명상음악 = ▼x(A) day, the gift of blessing /▼d바오로딸 [편]
245	00	▼aCheck it out▼h[녹음자료] /▼dJ. KILL
245	00	▼aFlow 2 flow▼h[녹음자료] /▼dDok2, ▼eDouble K
245	00	▼aPremiere night▼h[녹음자료] /▼dYoung boyz
245	00	▼aidiosyncratic▼h[녹음자료] /▼dYeo Seop Yoon
245	00	▼aLost in memories▼h[녹음자료] /▼dYankie
245	01	▼a(The) birth of the youth▼h[녹음자료] /▼dJaylogic
245	00	▼aSound craft▼h[녹음자료] : ▼bthe masterpiece of collabo /▼dJa, ▼eGiant

〈그림 1〉 녹음자료의 책임표시 사항 기술부분의 일부

〈그림 1〉을 보면 실제 녹음자료의 서지레코드에서는 목록규칙에서 제시한 책임표시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저자가 책임표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주된 책임표시에는 작곡자나 작사가보다 KCR4에서 제시한 녹음자료의 책임표시 범위 중 5번째인 연주자나 가수가 더 빈번하게 기재되어 있다(KCR4 6.1.6.1).

그렇다면 작사자나 작곡자, 제작자와 같이 책임표시에서 제외된 역할을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표 6〉을 보면 책임표시에 기재된 '정승일'을 제외하고도 다른 역할들이 서지레코드에 존재하는데, 일부는 발행사항에 기재되고 일부는 내용주기에 기재되어 있다.

물론 700 필드에 각 역할을 부출하였으므로

모두 검색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표 6〉을 제시한 것은 KCR4에서 규정한 책임표시의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 작사자, 작곡자, 가수, 제작자가 실제 서지레코드에서는 여러 필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책임표시에 기재된 저자가 주기에 기재된 저자보다 더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Panizzi의 '규칙64'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표 7〉에 제시된 녹음자료의 사례도 저자의 역할 자체가 기재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표 7〉의 사례를 보면, 동일한 녹음자료의 책임표시에서 삽화가, 원작자, 편찬자가 각각 주된 책임표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 연구를 보면 기재순서가 저자들

〈표 6〉 녹음자료의 책임표시 사항 기술 예시(1)

245	00	▼a보낼수 없는 이별▼h[녹음자료] /▼d정승일
260		▼a[서울]:▼bHama Entertainment [기획/제작],▼c[2011]
505	00	▼n1.▼t보낼수 없는 이별 /▼d박민호 작사/작곡▼g(04:05) --▼n2.▼t고마워요 /▼d박민호 작사/작곡▼g(03:25) --▼n3.▼t나이만 먹었습니다 /▼d작곡: 김성호 ;▼e작사: 이외수(時)▼g(04:02)(후략)
700	1	▼a정승일
700	1	▼a박민호
700	1	▼a김성호
700	1	▼a이외수

〈표 7〉 녹음자료의 책임표시 사항 기술 예시(2)

245	20	▼a(보여주고 들려주는 CD북, 보들북!) 첫 클래식.▼h[1-2]▼h[녹음자료] /▼d일러스트: 이지희 ;▼e글: 정행순
245	00	▼a디지털 게임, 상상력의 새로운 영토▼h[녹음자료] /▼d원작: 이정엽 ;▼e연출: 류한수
245	00	▼a드림아이▼h[녹음자료] =▼xDream-I:▼b요단 어린이 CCM 노래CD(반주 MR 포함) /▼d요단출판사 [편]

의 기여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책임표시 사항의 기재순서는 이름의 자모순이나 연구자의 지위와 같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Costas and Bordons 2011; Burrows and Moore 2011).

### 3.2 구조화된 역할어 정보의 구축

현재 책임표시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책임표시가 서지레코드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술부의 정보를 표목부에 반복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책임표시 사항 외에 여러 주기사항에서 책임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책임표시 사항에 기재할 수 있는 책임표시의 개수에 제약이 컸던 카드목록 시대에 만들어진 저록의 구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표 8〉은 책임표시의 분산 정도가 큰 자료유형인 비디오 녹화자료의 사례이다. 이 서지레코드를 보면, 감독은 책임표시 사항에, 발행처는 발행사항에 기술되어 있고, 제작자나 각본, 촬영, 음악, 편집을 비롯한 제작진은 제작진 주

기에, 배우와 배역은 연주자와 배역진 주기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주기에 기술된 배역진에 관한 정보가 부출표목에 있으므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문제점이 남는다. 첫 번째는 제작진은 접근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발행처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60필드의 \$b 기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작 역할어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구조화되지 않은 역할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역할어가 접근이나 검색결과와 정렬 등에 활용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표시와 관련된 규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책임표시 사항을 접근이 아닌 식별을 위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책임표시의 목적은 ‘개인이나 단체를 역할과 관련된 어구와 함께 기재하여 저작의 식별요소’로 삼기 위한 것이다(KCR4 1.1.6.0). 그러나 접근과 식별의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책임표시 사항의 역할어는 표목부에 기재될 때는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표 8〉 비디오 녹화자료의 책임표시의 기술 사례

245	00	▼a셀위 댄스?▼h[비디오녹화자료] /▼d감독: Masayuki Suo
260		▼a[서울]:▼bMaru Entertainment [제작/판매],▼c2011
508		▼a제작진: 제작, Tetsuya Ikeda, Yuji Ogata, Shoji Masui : 각본, Masayuki Suo : 촬영, Naoki Kayano : 음악, Yoshikazu Suo : 편집, Junichi Kikuchi : 미술, Kyoko Heya
511	1	▼aKoji Yakusho(쇼헤이 스기야마 역), Tamiyo Kusakari(메이 기시가와 역), Naoto Takenaka(토미오 아오키 역), Eri Watanabe(토요코 타가하시 역)
700	1	▼a수오 마사유키,▼d1956-
700	1	▼aYakusho, Koji
700	1	▼aKusakari, Tamiyo
700	1	▼aTakenaka, Naoto
700	1	▼aWatanabe, Eri(후략)

〈표 9〉 책임표시의 역할어를 표목에서 활용

1)	245	00	▼a도시계획학사전 /▼d도영준,▼e박주원 편저
	700	1	▼a박주원▼e편저(선택사항)▼4com(편찬자)
2)	245	00	▼a이호철 소설 연구:▼b작품 '소시민'의 공간 분석/▼d박주원
	700	1	▼a박주원▼e[저](선택사항)▼4aut(저자)
3)	245	10	▼a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참 아름다운 선물/▼d카트린 휘브스 지음:▼e박주원 옮김
	700	1	▼a박주원▼e옮김(선택사항)▼4trl(번역자)

서지레코드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책임표시 사항에 기재된 저자명이 자동으로 표목으로 기재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시스템에 미리 등록되지 않은 역할어가 저자명과 혼동이 생겨 목록작성 과정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역할어 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책임표시에서 역할어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KOLAS3 FAQ 2010). 그런데 책임표시의 정보를 표목부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원칙적으로 표목에서 역할어를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그램에서 역할어 관리 기능이 있다면, 이를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화시키는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를 예시로 들면 〈표 9〉와 같다.

따라서 역할 중심의 책임표시란 책임표시 사항을 기술할 때 저작 역할어를 체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700필드를 비롯한 표목부에 기본적으로 \$e와 \$4와 같은 저작 역할어를 위한 공간이 있으므로, 〈표 9〉와 같은 표기를 위해 규칙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국립중앙도서관 편 2006). 다만 현재 서지레코드의 표목부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식별기호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현재의 관행과 같이 저작 역할어를 계속 생략한다면, 저작 역할어의 식별과 기술에 소요되는 지적 노력을 이

용자의 편의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4. 기대효과

### 4.1 책임표시 정보의 품질 제고

일반적으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저작과 저자와의 관계를 밝히는 역할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으뜸정보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각괄호를 사용하여 추정한 역할어를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할과 관련된 정보가 기술사항에 충실히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조화시켜 접근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명확한 책임표시는 책임표시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다.

한편 구조화된 역할 정보는 RDA의 '관계 표시 기호'(relationship designators)와 같이 상이한 표준과 책임표시 정보를 연계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관계 표시기호는 RDA의 부록I에 제시되어 있는데, MARC21의 '관계기호'(relators)와 달리 FRBR의 서지개체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이다. RDA의 관계 표시기호 중 KORMARC의 역할어 코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JSC 2009; 국립중앙도서관 2006).

〈표 10〉 RDA의 주요 관계 표시기호(RDA 부록 I)

개체 유형	관계 표시기호
저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자 건축가, 예술가(조각가 포함), 저자(가극작가, 작사자, 극작가 포함), 지도 제작자, 안무가, 편찬자, 작곡가, 디자이너, 영화제작자, 피회견자, 회견자, 발명자, 사진작가, 논문지도교수, 프로그래머, 피고수취인, 상소인, 피상소인, 피헌정자, 피고인, 학위수여기관, 감독, 영화촬영기사/촬영감독, 원고, 영화 제작자, 후원자</li> </ul>
표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여자 애니메이터, 편곡자, 안무가, 작곡가, 의상 디자이너, 도안가, 편자, 삽화가, 피회견자, 회견자, 공연자(연기자, 비평가, 지휘자, 무용가, 진행자, 연주자, 토론진행자, 내레이터, 인형조작자, 가수, 연설자, 이야기꾼, 교사 포함), 레코딩 엔지니어, 측량사, 전사자, 번역자, 논평가, 서문저자/발문저자 등</li> </ul>
구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자 북 디자이너, 사진제판자, 조판공, 예칭 제작자, 석판공, 판인쇄자, 인쇄인, 조판자</li> <li>• 발행처</li> <li>• 배포자</li> </ul>
개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자 (현)소유자(위탁자 포함), 전소유자(기증자 포함)</li> <li>• 소유자 이외의 개인이나 가족, 단체 주석자, 서명자, 제본자, 큐레이터(수집가 포함), 피헌정자(dedicatee), 피헌정자(honouree), 사본장식가, 증정자, 원가(restorationist)</li> </ul>

이 외에 MARC21에서도 역할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MARC21의 역할어는 KORMARC의 경우와 같이 표목부의 식별기호 \$e와 \$4를 통해 표현된다(Mukhopadhyay 2007).

#### 4.2 검색 결과의 정렬 및 확장

도서관 목록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OPAC의 인터페이스를 이용자 친화적이고 검색과 브라우징에 더욱 편리하도록 개선한 '차세대 도서관 목록'(NGC)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NGC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레코드의 검색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기술로는 웹 2.0과 관련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별점, 서평 등)와 패킷화 된 브라우징 및 검색결과 정렬

기능, 관련 자료의 추천 등이 있다(Breeding 2010). NGC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차세대 OPAC의 요건으로 검색 인터페이스의 개선과 검색 기능(패킷 방식의 브라우징 및 정렬 포함) 등을 들고 있다(구중억, 박승진 2007). 또한 윤정옥의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NGC 사례인 '차세대 멜빌 파일럿'와 'SearchWorks'를 비교하였는데, 주요 비교사항으로 검색 화면과 결과 디스플레이 방식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결과 디스플레이에서는 패킷화된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제시하는 기능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윤정옥 2010).

〈그림 2〉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검색결과 화면으로서 '김대중'이라는 저자 키워드로 검색된 천 건이 넘는 결과를 검색된 자료의 언어나 발행년대, 주제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그림 2〉 검색결과의 패킷 내비게이션 사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 <http://www.dibrary.net/>)

것이 패킷화된 내비게이션의 사례이다. 저작을 주제별로 구분하는 것은 부정확한 검색 결과인 ‘잡음’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저자들이 둘 이상의 주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표시와 관련된 역할을 구조화하여 검색결과를 정련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구조화된 역할어를

저자의 패킷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1>의 사례는 ‘박주원’이라는 저자의 검색 결과인데, 실제 검색결과에서 역할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 레코드만 발췌하였다. 245 필드의 책임표시 정보가 표목으로 부출될 때, 구조화된 역할어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표 11>과 같이 역할별 패킷을 적용할 수 있다.

〈표 11〉 ‘박주원’으로 서지레코드를 검색한 결과의 일부

1) 편저자의 역할		245 00 ▼a도시계획학사전 /▼d도영준,▼e박주원 편저
	700 1 ▼a박주원▼e편저(선택사항)▼4com(편찬자)	
2) 삽화가의 역할		245 20 ▼a놀이터 /▼d글: 재미난책보 ;▼e그림: 박주원
	700 1 ▼a박주원▼e그림(선택사항)▼4ill(삽화가)	
3) 저자의 역할		245 00 ▼a이호철 소설 연구:▼b작품 '소시민'의 공간 분석/▼d박주원
	700 1 ▼a박주원▼e[저](선택사항)▼4aut(저자)	
4) 번역가의 역할		245 10 ▼a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참 아름다운 선물/▼d카트린 휘브스 지음:▼e박주원 옮김
	700 1 ▼a박주원▼e옮김(선택사항)▼4trl(번역자)	

### 4.3 전거제어 정보의 제공

전거제어는 목록의 주된 기능인 저작의 집중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접근점을 연결시키는 수단이다(김태수 2004). 따라서 전거레코드를 작성할 때 동명이인의 구분이나 저작의 식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전거레코드에 수록되는 정보를 보면, 저자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식별 정보가 들어 있다.

〈표 12〉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전거레코드의 사례이다. 이 사례를 보면 저자명의 다양한 형식 외에도 생몰년(400 필드의 \$d)과 관련 저작(670 필드), 전기정보 또는 관련 분야 정보(678 필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저자들의 경우에는 생몰년이나 한자명과 같은 유형의 정보가 식별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표 12〉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레코드 사례 일부

---

400	\$a노신 = \$h魯迅, \$d1881-1936
400	\$a주수인 = \$h周樹人, \$d1881-1936
400	\$a저우수런, \$d1881-1936
670	\$a아Q정전, (문예출판사), 2001
678	\$a중국의 문학가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nl.go.kr/nation/c3/page3\\_4.jsp](http://www.nl.go.kr/nation/c3/page3_4.jsp)〉

그런데 670 필드나 678 필드는 식별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필드의 유형상 주기에 해당하므로 구조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화된 역할어를 전거레코드에 저자명과 연계하여 추가할 수 있다

면, 더욱 체계적인 전거제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 역할어는 언어 형식으로 그대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부호 형식으로도 수록될 수도 있다.

KORMARC에서 제공하는 위의 예시에 저작 역할어를 추가하여 레코드를 수정하면 〈표 13〉과 같다. 이 예시를 보면 670 필드에 식별기호 \$d와 \$4를 추가하여 저작 역할어와 역할어 코드를 나타냈다. 이 때 역할어 코드는 KORMARC에 제시된 역할어 및 정보원 기술부호를 이용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6, 부록B). 670 필드를 이용한 것은 역할어가 저작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670 필드에 제시된 저작은 한국어 번역판이므로 '루쉰'의 역할은 '원저자'가 된다. \$4는 원칙적으로 'org'와 같이 부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데이터 저장 공간의 제약이 거의 사라져서 요약이나 약자 대신 완전명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시스템에서 언어(원저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KORMARC 규칙에서는 670 필드가 주기에 해당하므로 \$d나 \$4와 같은 식별기호를 사용할 수는 없다. 〈표 13〉은 앞으로 서지레코드 작성 방식을 개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표 13〉 저작 역할어를 추가하여 수정한 전거레코드 사례

---

(전략)	
400	\$a노신 = \$h魯迅, \$d1881-1936
400	\$a주수인 = \$h周樹人, \$d1881-1936
400	\$a저우수런, \$d1881-1936
670	\$a아Q정전, (문예출판사), 2001 \$d지음 \$4org(원저자)
678	\$a중국의 문학가

---

저작 역할을 전거레코드에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저자명과 관련 저작정보를 연계한 전거레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김태수 등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인데 해당 연구에서 제안된 전거레코드 사례는 <표 14>와 같다.

<표 14> 관련 저작정보를 추가한 전거레코드 사례

---

4001	▼a오에 겐자부로.▼tM/T와 숲의 이상한 이야기
4001	▼a대강건삼랑=▼h大江健三郎.▼t作家自身を語る
4001	▼a오오에 겐자부로.▼t일상생활의 모험
678	▼a문학

---

출처: 김태수 외 2009, 14.

<표 14>의 방식은 특정 저자명의 형식과 표제를 직접 연결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오에 겐자부로'라는 표현은 표제가 'M/T와 숲의 이상한 이야기'인 자료에 기재된 저자 표기 형식이다. <표 14>에 역할어 정보를 추가하여 수정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관련 저작정보를 추가한 전거레코드 사례

---

4001	▼a오에 겐자부로.▼tM/T와 숲의 이상한 이야기 ▼d지음▼4org(원저자)
4001	▼a대강건삼랑=▼h大江健三郎 \$t作家自身を語る▼d著者▼4aut(저자)
4001	▼a오오에 겐자부로.▼t일상생활의 모험▼d지음 ▼4org(원저자)
678	▼a문학

---

이상으로 전거제어에서 식별을 위해 저작 역할어를 제공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

은 정보는 전거레코드가 서지레코드 관리시스템이 상호 연계 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저작정보에 해당하는 서지레코드에서 역할어를 가져와 전거레코드에 추가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 5. 요약 및 결론

서지기술에 있어서 책임표시와 관련된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역할어는 저자의 책임 유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함께 공저나 단체 저자의 저작물이 증가하면서, 특정 유형의 책임성이 다른 유형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책임표시 사항을 역할별로 나누어 특정 역할은 주된 접근점으로 삼고, 나머지 역할은 주기사항에만 기재하거나 심지어 생략하는 것은 목록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취지에서 '3의 법칙'은 폐지되었지만, 책임표시에서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의 구분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서지레코드를 작성할 때 주된 역할과 부차적인 역할의 구분에 치중하기보다는 각 책임의 소재를 밝혀주는 역할어를 체계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전통적으로 목록작성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선정하기 위해 저자의 기여도를 차별화시켜 온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작의 생산에 기여한 대상인 책임표시를 자료의 접근과 식별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목록의 목적은 언제나 이용자가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책임표시 사항을 기술할 때,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나누는 것보다 역할 자체를 구조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역할 구분과 저자명의 기재 순서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다. 책임표시에서 저자명의 기재순서는 정보원에 나타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으로는 현재 표목

으로 올라갈 때 제거되는 역할어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안이다. 이미 기술부에서 저작 역할어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역할어를 구조화하기 위한 기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시스템 기능이나 책임표시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 역할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책임표시 정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역할어를 검색의 패킷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거레코드의 동명어인 식별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구중역, 광승진. 2007.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61-88.
-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김태수. 2004. 전거제어활동의 최근 동향연구. 『지식처리연구』, 5(1/2): 1-32.
- 김태수, 김이걸, 이혜원, 김용광, 박지영. 2009. 전거레코드 표목의 구조화 연구 - 인명과 단체명 전거레코드의 표목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40(3): 1-21.
- 노지현. 2005. 한국 자료조직 연구의 지적 토대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329-351.
- 리재철. 1983. 『한국문헌정보학의 문제들』. 서울: 구미무역.
- 윤정옥. 2010. 차세대 도서관 목록 사례의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5-28.
- 이경호. 2009. KORMARC 245필드 입력형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181-207.
- 이명규. 1999. OPAC에서의 AACR2R문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16(1): 119-136.
- 정옥경. 2000.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2): 135-157.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2002 Revis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reeding, Marshall. 2010. *Next-gen Library Catalogs*.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 British Museum. 1936. *Rules for Compiling the Catalogues of Printed Books, Maps, and Music in the British Museum*. Revised edition. London: British Museum.
- British Museum. 1841. *Catalogue of Printed Books in the British Museum, vol.1*. London: British Museum.
- Burrows, Suzetta and Mary Moore. 2011. "Trends in authorship order in biomedical research publications."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in Medical Libraries*, 8(2): 155-168.
- Costas, Rodrigo and María Bordons. 2011. "Do age and professional rank influence the order of authorship in scientific publications? Some evidence from a micro-level perspective." *Scientometrics*, 88(1): 145-161.
- Cutter, Charles A. 1904.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 Washington: Govt. print. off.
- Dunkin, Paul S. 1961. "Guesstimates unlimited: The draft code in imagined operation." *Library Resources Technical Services*, 5(3): 179-185.
- Harris, Kay and Audrey Smith. 1957. "The divided catalog, a reappraisal." *Library Resources Technical Services*, 1(1): 21-30.
- Howarth, C. Lynne. 2008. "Enigma variations: Rarsing the riddle of main entry and the "Rule of Three" from AACR2 to RD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6(2): 201-220.
- IFLA Study Group on FRBR. 2009.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al Records. Final Report*. IFLA. (1998판의 보완판).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Development of RDA (JSC). 2009. *RDA: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http://access.rdatoolkit.org/>>.
- Lehnus, Donald J. 1972. *A Comparison of Panizzi's 91 Rules and the AACR of 1967*.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 Mukhopadhyay, Asoknath. 2007. *Guide to MARC 21 for Cataloging Books and Serials with Functional Definitions, Examples and Working Resources*. England: Chandos Publishing.
- NFAIS. 1998.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tent creators, providers, and users." (NFAIS White Paper). *Information Services & Use*, 18: 153-157.
- Suljak, Nedjelko D. 1971. "Copyright and the question of authorship."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15(4): 513-521.

〈전자게시판〉

KOLAS3 FAQ. "[정리] 부출 시 역할어가 제외되지 않은 채로 부출 처리되어집니다." [online]. [cited 2011.8.22]. <[http://www.kolas3.net/bbs/board.php?bo\\_table=faq&wr\\_id=155](http://www.kolas3.net/bbs/board.php?bo_table=faq&wr_id=155)>.